

충남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2.22.]

1차 개정 2015.3.12.

2차 개정 2017.2.09.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식품공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과목은 학생이 해당 학위 과정 중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석사3과목, 박사 4과목을 선택한다. 단, 별표1의 세미나 관련 교과목은 제외한다.

③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한다.

④ 채점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위촉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⑦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1. TEPS 476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63점 이상
4. TOEFL(iBT) 57점 이상
5. TOEFL(PBT) 490점 이상
6. OPIC IM1
7. TOEIC Speaking 110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제5조 ①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 조건부 입학자의 경우에는 조건부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졸업자격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PBT 550, CBT 210, iBT 80), TEPS 550점, TOEIC 650점, IELTS 5.5점 이상의 점수를 득함을 증명하여야함).(개정 2015.3.12.)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내실 있는 논문 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3.12.)

②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2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3.12.)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15.3.12.)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개정 2015.3.12.)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SCOPUS급 이상(SCI, SCIE 및 SCOPUS급) 논문에 최소 1편 이상 투고하거나 전공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포스터 또는 구술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단, 논문 투고 및 학술대회 발표 시 저자의 종류는 무관하다. (개정 2015.3.12.) (개정 2017. 2. 9.)

② 전공 관련 국내·외 특허를 1건 이상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학술지 논문 1편과 동등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2. 9.)

제8조 (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5. 3.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기준,논문지도위원회,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
를 수 있다.

부 칙(2017. 2. 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종전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세미나 관련 교과목 목록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비고
세미나 관련 교과목	64373	식품공학연구1	
	64374	식품공학연구2	
	64375	식품공학연구3	
	64376	식품공학세미나1	
	64377	식품공학세미나2	
	64378	식품공학세미나3	